

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③ 금융회사는 <u>제1항의</u> 통지를 할 경우 “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<u>통지</u>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<u>통지</u>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④ 채무자가 <u>제2항의</u>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</p>	<p><u>아니하겠</u>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개별통지를 하지 않습니다.</p> <p>③ ----- <u>제1항의</u> 게시 또는 <u>제2항의</u> ----- -----<u>제1항의</u> 게시 또는 <u>제2항의</u> 통지를----- ----- ----- -----<u>게시 또는 통지</u>-----.</p> <p>④ ----- <u>제1항의</u> 게시 또는 <u>제2항의</u> 통지----- ----- ----- -----.</p>	